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수산부문 시사점

2005. 9. 22

목 차

<요 약>

I.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검토 필요성	1
II. 중국의 FTA 수산부문 협상	4
III. 시사점	20

<부 록>

< 요약 >

중국,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향해 FTA 확대 노력 강화

- 중국은 2002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18개국과 FTA 협상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경쟁국인 일본보다 앞서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이 지난 8월 우리나라에 FTA 협상을 제안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할 수 있음

중국·아세안 FTA, 수산물 교역을 조기관세자유화 품목으로 지정

- 중국과 아세안은 관세자유화 카테고리를 조기관세자유화 분야, 일반 분야, 민감 분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수산물 즉 03류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 세부적으로 조기관세화 품목에 대하여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을 WTO 가입국과 WTO 비가입국으로 구분하여 WTO 가입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WTO 비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합의하였음

일부 수산물에 대한 예외 품목 설정

- 그러나 중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같은 WTO 비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수산물을 조기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 미얀마 같은 경우 대부분의 수산가공품(HS코드 16류 수산가공품 14종)에 대하여 양국이 현재로서는 전혀 교역이 없으나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미얀마가 아직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개발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입장에서 조기 관세철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됨

대중국 FTA,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전략 준비해야

-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수산물에 대하여 조기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세안과는 생산이나 교역구조가 상이하여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중국·아세안 FTA 추진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자유화 일정을 늦추는 것을 용인한 사례가 있는 만큼
 -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시킬 수 있는 전략과 근거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한·중 FTA 대비 국내 구조재편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중 FTA를 포함 향후 전개될 전면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비, 예상되는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수산업의 유지·보존을 위한 국내 수산업의 구조재편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중국의 FTA 협상동향 예의 주시해야

- 중국은 아세안과 FTA 체결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수산선진국 들과의 FTA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동시다발적 FTA를 천명한 우리나라로서도 예외일수 없는 사항으로
 - 이들 국가와 중국간의 FTA 협상결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되는 중국의 FTA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I.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검토 필요성

중국, FTA 적극적으로 추진

- 2004년에 중국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및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CC)의 6개국,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의 5개국, 호주, 칠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한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임

〈표 I -1〉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 현황

대상국	추진 현황
아세안	중국·아세안 FTA 발효 －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서명(2002.11) － FTA 상품협상 최종 합의(2004.11) － FTA 발효(2005.7)
호 주	중국·호주 FTA 협상 중 － ‘중국·호주 공동무역경제체제’ 결성(2003.10) － 1차 협상(2005.5); 2차 협상(2005.8)
칠 레	중국·칠레 FTA 협상 중 － 1차 협상(2005.1); 2차 협상(2005.4); 3차 협상(2005.6)
뉴질랜드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 중 － 1차 협상(2004.12); 2차 협상(2005.3); 3차 협상(2005.5); 4차 협상(2005.7)
파키스탄	중국·파키스탄 FTA 협상 중 － ‘중국·파키스탄 조기관세자유화조치’ 체결(2005.4) － 1차 협상(2005.8)
GCC	중국·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CC) FTA 협상 중 － 1차 협상(2005.4); 2차 협상(2005.6)
SACU	중국·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FTA 협상 합의(2004.6)
한 국	연구·논의 단계 －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합의(2005.3) － 중국정부,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 제의(2005.8)
인 도	연구·논의 단계
카자흐스탄	연구·논의 단계

중국, 한·일 제치고 통합리더로 떠올라

- 지난해 11월에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사이에 체결된 FTA가 올 7월부터 공식 발효되면서 이 지역 경제통합체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음
 -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차프타(CAFTA=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경제권은 2003년 기준으로 GDP가 2조 1,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역내 교역량이 1조 6,600억 달러가 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음
 - 이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EU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아세안 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한·중·일간 경쟁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게 된 것을 의미함

‘10+1’ 협상으로 중국·아세안 경제통합 난제는 남아

- 그러나 중국·아세안 경제통합의 협상은 ‘1대1’ 협상이 아닌 ‘10+1’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브루나이·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 등은 중국과의 상품 분야 FTA에 대한 국내 비준을 마쳤지만, 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은 아직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음
 - 더불어 올해부터 착수하기로 한 투자·서비스 부문 FTA협상은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음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도 적극 추진 중

- 2003년 10월에 중국과 호주는 ‘공동무역경제체제’를 결성한 후 올해 두 차례의 협상을 마무리했고
 - 뉴질랜드와는 200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되어 현재 제4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 칠레와는 네 차례의 협상을 거쳐 올해 연말에 양국간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은 올해 4월에 ‘조기관세자유화조치’를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기로 하여 8월에 무관세 대상 품목의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였고
 - 이 외에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의 6개국,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의 5개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한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 나라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음

한·중 FTA 체결, 신중한 검토 필요해

- 이렇게 중국은 대규모적으로 FTA 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은 편임
 - 최근 중국이 한·중 FTA의 조기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비교우위 제품의 수출은 증대되지만 농수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추측됨
- 한국의 제1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한·중 FTA의 경제·사회적 득실을 치밀하게 따지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특히 수산부문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수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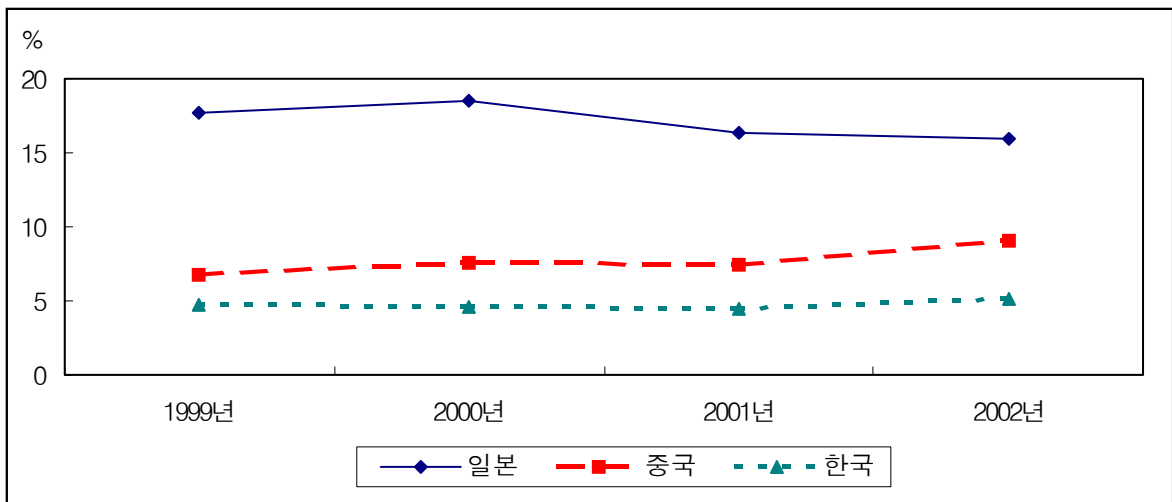
Ⅱ. 중국의 FTA 수산부문 협상

1. 중국·아세안 FTA

중국·아세안 FTA, 중국의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의 첫걸음

- 2002년 1월 WTO 회원국으로 되며 이어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중국 경제는 아시아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아세안은 2002년 기준, GDP 규모가 6,10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2배 규모인데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매우 역동적인 신흥 시장을 갖추고 있음
 - 중국 상품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1999년 6.7%에서 2002년 9.1%로 상승하였음
- 중국·아세안 FT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아세안 FTA와 함께 한국·중국·아세안을 잇는 중요한 지역협정 틀로서 역내 무역흐름을 한층 확대시킬 것임

〈그림 Ⅱ-1〉 아세안 시장에서 한·중·일의 점유율 변화



자료 : WTO, WTA(World Trade Atlas)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 FTA 협상 일정 작성

- ☐ 중국은 아세안 10개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WTO 가입국가와 비가입국가로 구분하여 협상 일정을 마련하고 관세 양허표 또한 별도로 작성하고 있음
- 중국과 아세안은 FTA 협정¹⁾을 통해 2005년 7월 20일부터 2010년까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하기로 하였으나
 - WTO에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국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8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하였음

〈표 II -1〉 중국·아세안 FTA 추진과정 및 내용

시 점	추진과정 및 내용
2001년 11월	중국·아세안 FTA 추진 합의
2002년 11월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서명
2004년 1월	FTA 체결 전 500여개 품목에 대해 ‘조기관세자유화조치’ 시작
11월	FTA 상품협상 최종 합의
2005년 7월	중국+아세안 선발 6개국 FTA 대상 7,445개 교역품목의 40%이상에 0~5% 관세율 적용
2006년 1월	조기자유화 품목 관세 철폐
2007년 1월	중국+아세안 선발 6개국 대상 교역품목의 60%이상에 0~5%관세율 적용
2009년 1월	중국+아세안 후발 6개국 대상 교역품목의 50%이상에 0~5%관세율 적용
2010년 1월	중국+아세안 선발 6개국 관세 철폐
2015년 1월	중국+아세안 후발 4개국 관세 철폐
2020년까지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 완료

자료 : 조선일보

- ☐ 비관세 협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이나 비관세장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WTO 비회원국인 4개국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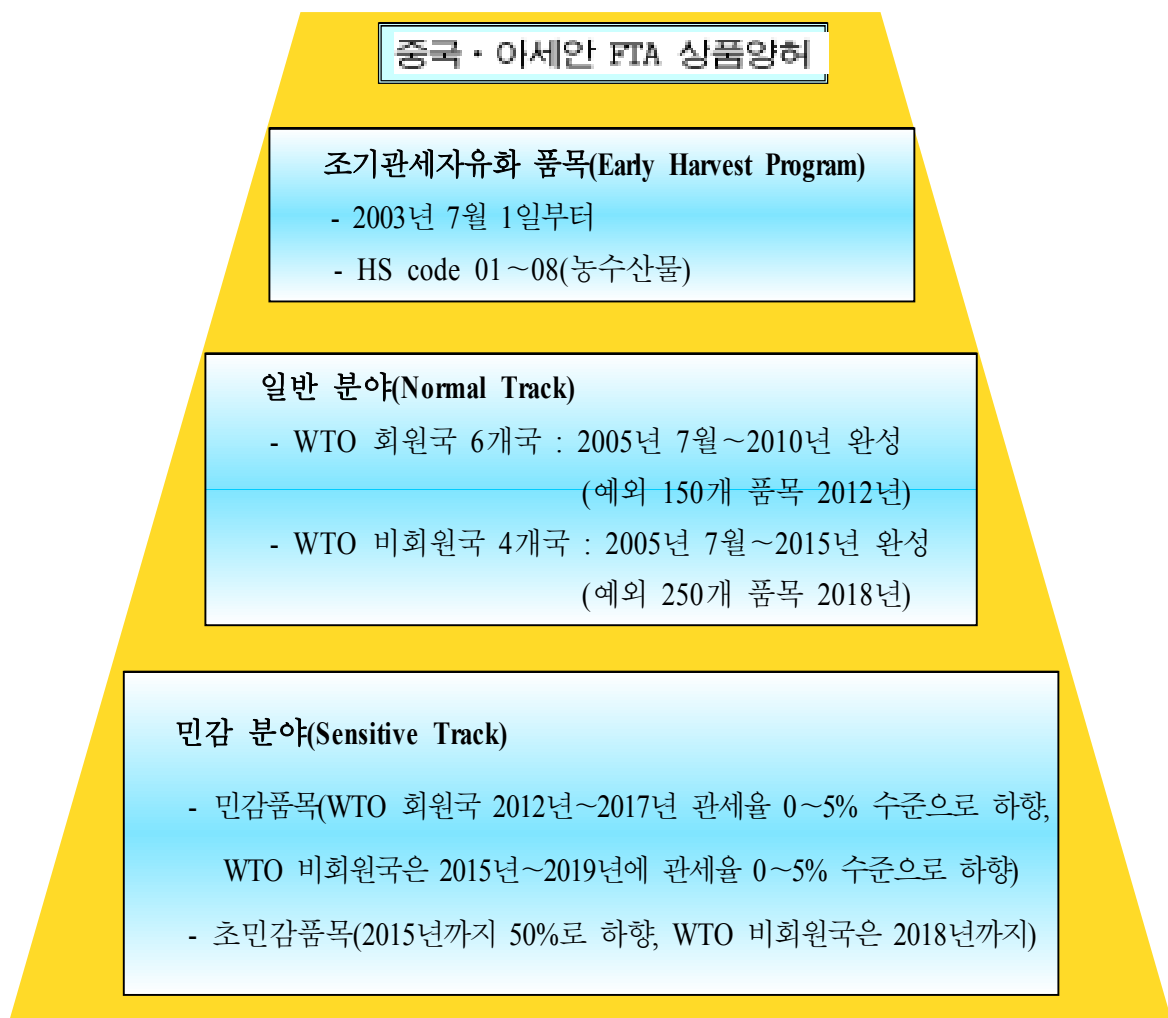
1) 동 협정의 정식 명칭은 ‘Agreement on Trade in Goods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하 중국·아세안 FTA)’임.

- WTO 비회원국은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면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4년간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관세인하 품목, 3단계로 구분

- 중국·아세안 FTA에서 상품양허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조기관세자유화 품목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일반 분야와 민감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II-2〉 중국·아세안 FTA 상품무역 관세양허 틀



자료 : 중국·아세안 FTA 협정문

- 조기관세자유화(Early Harvest Program)는 주로 1차 상품 약 550여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 외 공산품에 대한 관세양허는 이원 체계(Double-Track System)에 따라 일반 분야(Normal Track)와 민감 분야(Sensitive Track)로 구분하고 있음
- 이러한 관세양허 틀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 중 WTO 가입국가와 비가입국가로 구분하여 협상 일정을 마련하고 양허기준 또한 별도로 작성하고 있음
- 일반 분야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삭감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0%가 되어야 하나
- 예외적으로 WTO 비회원국 4개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으며
 - 일반 분야 품목 중 WTO 회원국은 150개, WTO 비회원국은 250개에 대하여 예외적인 유연성을 부여하여 각각 2012년, 2018년까지 관세를 모두 철폐하도록 하였음
-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그 상품 내에서도 민감 품목과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민감 품목(Sensitive list)은 WTO 가입국의 경우 2001년 무역통계기준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10% 내에서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400개에 대하여 관세율을 2012년까지 20%수준으로, 2018년까지는 0~5% 수준으로 낮춰야 함
 - WTO 비가입국은 민감 품목을 500개까지 확대 적용하여 2015년까지 20%수준으로, 2020년까지는 0~5% 수준으로 낮춰야 함
 - 초민감 품목(Highly Sensitive list)은 각 국의 민감 품목 중 40% 이하 또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100개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것을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2015년까지 관세율을 50% 수준까지 낮추어야 함

〈표 II -2〉 중국·아세안 FTA 조기관세자유화 품목

HS 코드	품목명
01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2	육과 식용설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등)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	낙농류, 조란, 천연꿀
05	기타 동물제품(동물털, 모피, 녹용, 산호 등)
06	살아 있는 수목, 절화, 장식용의 잎 등
07	식용 채소류, 식용 뿌리(참, 매니옥, 고구마 등)
08	식용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

자료 : 기본협약 제6조 제3(a)항

〈표 II -3〉 중국·아세안 FTA 조기관세자유화 일정

구분			'04	'05	'06	'07	'08	'09	'10
WTO 가입국	제1카테고리		10%	5%	관세철폐				
	제2카테고리		5%	관세철폐					
	제3카테고리		관세철폐						
WTO 비가입국	제1카테고리	베트남	20%	15%	10%	5%	관세철폐		
		라오스, 미얀마			20%	14%	8%	관세철폐	
		캄보디아			20%	15%	10%	5%	관세철폐
	제2카테고리	베트남	10%	10%	5%	5%	관세철폐		
		라오스, 미얀마			10%	10%	5%	관세철폐	
		캄보디아			10%	10%	5%	5%	관세철폐
	제3카테고리	베트남	5%	5%	0~5%	0~5%	관세철폐		
		라오스, 미얀마			5%	5%	0~5%	관세철폐	
		캄보디아			5%	5%	0~5%	0~5%	관세철폐

주 : 제1카테고리-WTO 가입국은 MFN 실행관세율이 15% 초과 적용 품목/WTO 비가입국은 MFN 실행관세율 30% 이상 품목

제2카테고리-WTO 가입국은 5~15% 이하 품목/WTO 비가입국은 15~30% 미만 품목

제3카테고리-WTO 가입국은 5% 미만 품목/WTO 비가입국은 15% 이하 품목

자료 : 기본협약 부속서 3

수산물 대부분 조기관세 자유화 품목 대상에 포함

- 2002년 11월에 맺은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약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은 HS코드 03류로 분류되는 수산물 교역도 조기 자유화하는데 합의하였음²⁾
 - 조기관세자유화 대상에 포함된 수산물은 다시 카테고리를 3단계로 구분하여 관세 삭감 일정을 정하고 있는데
 - WTO 가입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적용관세율을 5%와 15%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고, WTO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15%와 30%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각각 2005년, 2009년까지 관세 철폐하도록 정하고 있음

중국·아세안의 수산물 조기관세자유화를 통해 관세 대폭 삭감

- 중국과 아세안은 수산물을 조기관세자유화 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2006년까지 대부분의 수산물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일부 WTO에 가입하지 않은 아세안 후발 국가들의 관세율 또한 2010년에는 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4〉 수산물 조기자유화 관세율 계획

국 가	2003	2005	2006(완료)
중 국	10.9%	1.7%	0.0%
인도네시아	4.9%	0.0%	0.0%
태 국	8.4%	0.4%	0.0%
캄보디아	17.9%	11.5%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이는 2002년 11월 4일 체결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약에 근거함. 이 협정은 중국은 아세안과 FTA를 맺기 전에 양측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골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협약의 원제목은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 of Republic of China(이하 기본협약)'임.

아세안, 일부 수산물에 조기관세인하 예외 품목 설정

- ☐ WTO 비회원국인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중국이 제안한 수산물 조기관세화에 대하여 일부 예외 품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 캄보디아는 잉어(HS코드 030190)이고 미얀마는 수산가공품(HS코드 16류 수산가공품 14종)임
 - 이들 품목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으나 캄보디아·미얀마가 예외 품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추후 이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조기관세철폐가 자국 상품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됨

〈표 II -5〉 미얀마의 민감 분야 예외 지정상품

HS 코드	품목명
160411	연어 진공포장 및 기타
160412	청어 진공포장 및 기타
160413	정어리류 진공포장
160414	다랑어류, 가다랑어 진공포장
160415	고등어 진공포장
160416	멸치 진공포장 및 기타
160419	기타 진공포장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어류의 진공포장, 생선반죽 및 기타
160430	캐비아 및 캐비아 대체품
160510	게 진공포장 및 기타
160520	새우 및 참새우의 반죽, 진공포장 및 기타
160530	가재의 진공포장 및 기타
160540	기타 갑각류의 진공포장 및 기타
160590	기타(전복 진공포장 및 기타, 기타의 진공포장 및 기타)

자료 : 중국·아세안 FTA 협정문

중국·아세안 FTA, EEZ 어획물 연안국 원산지부여 기준 적용

- ☐ 중국·아세안 FTA는 수산물의 ‘완전획득’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고 연안국 원산지부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WTO에서 EEZ 수산물의 원산지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EEZ 어획물에 대한 연안국 원산지 부여를 주장해 왔는데
- 실제 아세안은 중국과 2003년 체결한 FTA 기본협정 개정의정서에서 원산지 부여의 경우 해당 EEZ에 대한 개발권을 가진 국가의 국적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연안국 원산지부여를 중국이 허용한 것은 중국이 아세안국가들의 EEZ에 입어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풀이됨

〈표 II -6〉 **중국·아세안 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규정**

Rule 3

Wholly obtained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Rule 2(a),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a Party:

(f) products taken from the waters,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of that Party, provided that that Party has the rights to exploit such waters, seabed and beneath the seab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수산물 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 ☐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에 맺은 기본협약(제3조 제8항)에서 향후 진행될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위생 및 검역 조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 2003년에 합의된 중국·아세안 개정의정서에서와 2004년 11월에 합의된 중국·아세안 FTA 최종협정문에서도 위생검역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음
- ☐ 다만 중국·아세안 FTA 제12조에서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이 조항 하나만을 근거로 수산물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생 안전문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해석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이 조항 하나에 의존하여 수산물 검역체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물의 병원균 문제나 금지 화학물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제를 취할 때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표 II -7〉 중국·아세안 수산물 위생검역에 관한 조항

Article 12

General Excep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manner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 Party of measure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2. 기타 추진 중인 FTA

가. 중국·호주 FTA

중국, 호주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현재 중국은 호주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2004년에 상품과 서비스부문의 전체 교역액이 230억 달러로 2003년보다 50.3% 늘었음

- 호주는 중국의 아홉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천연가스의 수출이 점점 늘어 2006년에 약 190억 달러어치를 수출할 예정임
- 양국은 호주의 철광석, 천연가스, 알루미늄, 구리, 양모, 밀 등에 대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중국·호주 FTA 1,2차 협상 순조로워

- 2003년 10월에 중국과 호주는 ‘공동무역경제체제’를 결성한 후 올해 1월부터 공식협상에 들어갔음
 - 지난 5월에 시드니에서 열린 양국의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은 주로 자유무역경제권의 목표,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후 농업, 무역, 투자, 기타 교역 촉진 관련 협상을 위한 실무그룹 창설에 합의하였음
 - 8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는 양국의 무역체제 및 중국의 관리체계가 호주의 대중국 투자에 주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렇게 중국·호주 FTA 체결을 위한 1,2차 협상은 큰 장애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10월에 제3차 협상이 속개될 예정임

양국간 수산물 교역 계속 증가

- 중국과 호주의 수산물 교역은 양국의 수출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FTA 협상에서 많은 부분 자유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은 2001년부터 대호주 수산물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0301(활어), 0305(건조, 염장), 0307(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1604(가공어류, 캐비아 포함)의 수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 호주는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1604(가공어류, 캐비아 포함)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
- 양국의 수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조기관세화 상품으로 수산물을 개방할 것으로 보이나
 - 최근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 등 발암의심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수산물 위생 및 검역에 대해 호주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 -8〉 중국의 대호주 수산물 수출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504류	1603류	1604류	합 계
1998	1	0	331	213	15	208	1,332	3	-	605	2,708
1999	3	17	471	1,580	13	145	1,632	-	-	1,010	4,871
2000	0	7	495	1,085	14	721	2,654	-	-	1,516	6,492
2001	0	16	704	1,319	12	1,229	6,363	-	-	1,365	11,008
2002	54	-	881	1,954	0	2,394	10,202	-	-	1,757	17,242
2003	81	7	878	2,194	4	15,644	10,211	-	-	1,701	30,720
2004	120	-	970	3,702	173	15,357	14,828	-	-	3,678	38,828

주 : 0301은 활어

0302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 제외)

0303은 냉동어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제외)제 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0304는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는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은 갑각류 (산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

0307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갑각류, 연체동물제외,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1504는 어류 또는 해서포유 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화학적 변성한 것 제외)

1603은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4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표 II -9〉 중국의 대호주 수산물 수입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504류	1603류	1604류	합 계
1998	42	11	1,066	172	0	5,452	36	41	-	11	6,831
1999	89	19	1,520	275	23	7,224	295	204	-	2	9,651
2000	207	57	1,750	708	208	9,484	1,361	699	216	25	14,715
2001	458	1	3,047	34	460	13,035	1,644	79	116	5	18,879
2002	221	9	3,154	34	79	7,314	659	153	-	1	11,624
2003	436	-	4,885	87	-	9,864	3,024	29	-	8	18,333
2004	-	3	3,650	208	-	10,861	3,515	115	-	6	18,35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나. 중국·인도 FTA

중국·인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권 등장

- 세계 인구의 약 40%, 1조 7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진 자유무역권이 되는 중국·인도 FTA는 2003년 6월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체결을 건의한 데 이어 2004년 10월에 중국 탕자쥔(唐家璇) 국무위원이 인도에 체결을 공식 제의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 지난 4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인도를 공식 방문한 후 양국은 특히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제3국에서 공동합작 프로젝트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FTA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였음

중국·인도 FTA 단기간 체결 어려워

- 그러나 지난 8월에 인도 최대상회인 인도공상연합회는 자신들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도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였음
 - 현재 인도는 중국에서 주로 철광석, 솜과 섬유, 전자제품,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지만 FTA 체결 시 인도 국내 농업에 대해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이와 관령해 인도 상업부장관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국가로 인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양국의 FTA 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중국 당국도 인도와의 FTA 체결은 구체적인 통계분석과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1~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인도 FTA, 수산물 무역불균형 커 어려움 예상

- 중국과 인도의 수산물 교역은 최근 중국의 대인도 수산물 교역이 일부 증가하고는 있으나 인도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중국의 입장에서 수산물 조기자유화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달리 중국은 제조업 분야와 농산물 분야에서 무역불균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양국이 전격적인 FTA를 체결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많음

다. 중국 · 칠레 FTA

2004년 양국의 교역액 52% 늘어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의 대칠레 수출은 22% 증가했고 수입은 42%나 늘어났음

- 중국은 섬유, 첨단과학제품, 신발, 인형을 칠레에 수출하고 있으며 칠레는 구리, 제지, 수산물, 강철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2004년 중국의 대칠레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7억 달러, 37억 달러로 2003년보다 32%, 64% 늘어나 최근으로 올수록 교역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중국, 칠레에서 어분 수입 대폭 증가

□ 중국과 칠레의 수산물 교역은 칠레의 수출이 많은데, 특히 압도적으로 최근 중국의 칠레산 사료용 어분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칠레로 소량의 1604류(가공어류, 캐비어 포함)만 수출하고 있으나
- 대칠레 수입은 0303(냉동어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제외), 0304(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0307(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및 1504(어류 또는 해서포유 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가 늘어나고 있음

〈표 II -10〉 중국의 대 칠레 수산물 수출 실적

단위 : 달러

연 도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504류	1603류	1604류	합 계
2000	-	-	-	-	618	-	-	-	-	7,082	7,700
2001	-	-	-	-	-	23	-	14,160	-	-	14,183
2002	-	-	14,825	-	-	-	-	-	-	44,800	59,625
2003	-	-	-	-	-	-	-	-	-	63,496	63,496
2004	-	-	-	-	-	-	-	-	-	61,511	61,5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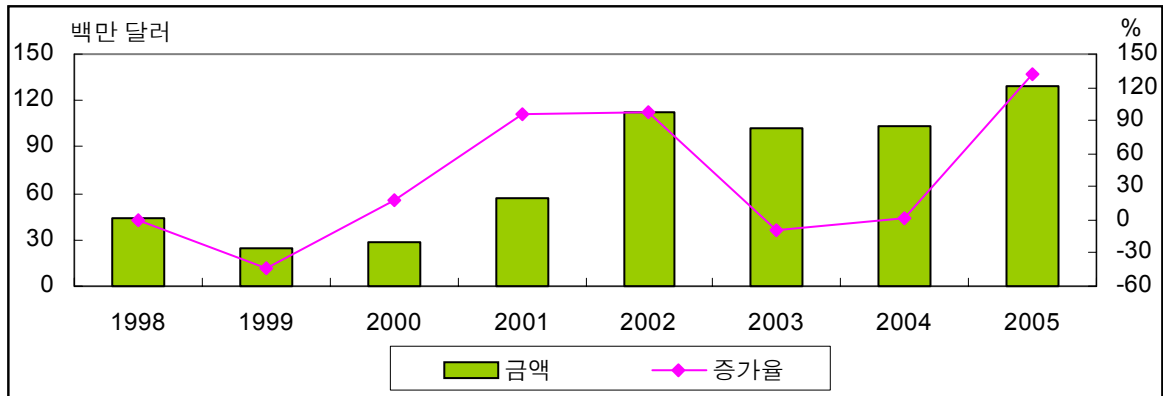
〈표 II -11〉 중국의 대 칠레 수산물 수입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504류	1603류	1604류	합 계
2000	-	0	4,786	729	-	-	230	622	-	-	6,367
2001	165	130	3,536	2,461	-	3	291	347	-	53	6,986
2002	63	1	8,730	1,479	-	-	135	232	-	4	10,644
2003	113	-	17,060	1,848	-	42	836	2,076	-	1	21,976
2004	4	65	7,952	2,643	-	179	2,580	3,508	-	-	16,9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그림 II -3〉 중국의 대 칠레 어분 수입 현황



주 : 2005년의 어분 수입은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중국·칠레 FTA 연말에 체결될 듯

□ 2003년 12월에 중국 무역부 차관이 칠레에 FTA 협상을 제안한 후 2004년 11월에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05년 1월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주로 협상 내용, 영역, 시간 등을 규정하였고 원산지표시 및 수출입검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였음
- 4월의 2차 협상에서는 시장 진입, 세관, 동물검역 등의 관련 법률과 문제점에 대해 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토론하였고
- 6월의 3차 협상에서는 관세, 원산지규정, 비관세무역장벽, 검역, 무역 구제 등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상하였음

- 지금까지의 협상이 순조로워 9월에 제4차 협상을 거쳐 올해 말에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라.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파키스탄 FTA 협상, 예상 밖에 급속히 추진되어

- 올해 8월에 제1차 협상이 시작된 ‘중국·파키스탄 FTA’ 협상은 예상 밖으로 급속히 추진되어 1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차 협상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였고 조기관세자유화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협의를 하였음

중국·파키스탄, 내년부터 조기관세자유화조치 실시하기로

- 이미 올해 4월에 중국과 파키스탄은 ‘조기관세자유화조치’를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기로 하였음
 - 양국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53개 품목에 대해 3단계로 나누어 관세를 점차 인하하고
 - 2008년 1월 1일부터는 대상 품목 전부를 무관세화하여 중국이 767개 품목, 파키스탄이 486개 품목을 양허하는데 합의하였음

〈표 II -12〉 중국의 대 파키스탄 수산물 수출 실적

단위 : 달러

연 도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504류	1603류	1604류	합 계
2000	3,457	-	-	-	-	-	4,363	-	-	-	7,820
2001	4,035	-	-	-	-	-	-	-	-	-	4,035
2002	1,354	-	10	-	-	-	-	-	-	-	1,364
2003	196	-	-	-	-	-	-	-	-	-	196
2004	-	-	-	-	-	-	7,767	-	-	-	7,7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표 II -13〉 중국의 대 파키스탄 수산물 수입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504류	1603류	1604류	합 계
2000	-	122	6,153	-	21	1,272	644	-	-	-	8,212
2001	-	269	4,135	-	-	349	355	-	-	-	5,108
2002	-	159	4,217	10	1	158	446	-	-	-	4,991
2003	-	244	7,975	16	-	409	931	-	-	-	9,575
2004	-	-	5,790	-	83	992	436	-	-	-	7,3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Ⅲ. 시사점

한·중 FTA, 신중한 접근 필요

- 중국은 2002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FTA 조기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경쟁국인 일본보다 앞서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이 지난 8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FTA 협상을 요청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할 수 있음
- 하지만 수산부문에서 볼 때 저가의 중국산 수산물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많은 위생 및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한·중 FTA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대중국 FTA, 민감 품목에 대한 유예전략 준비해야

-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수산물에 대하여 조기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아세안과는 생산이나 교역구조가 상이하여 중국·아세안에서 이루어진 전략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중국·아세안 FTA 추진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서는 대상국가의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관세화 예외를 인정하거나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자유화 일정을 늦추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만큼
 -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시킬 수 있는 전략과 근거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한·중 FTA 대비 국내 구조재편 대책 마련 필요

- ☐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대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식품 안전과 같은 관세 이외의 부문까지 고려한다면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 따라서 한·중 FTA를 포함 향후 전개될 전면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비,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수산업의 유지·보존을 위한 국내 수산업의 구조재편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중국의 FTA 협상동향 예의 주시해야

- ☐ 중국은 아세안과 FTA 체결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수산선진국 들과의 FTA도 서두르고 있는데
 - 이는 동시다발적 FTA를 천명한 우리나라로서도 예외일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간의 FTA 협상 또한 멀지 않은 시일에 추진이 거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이 경우 이들 국가와 중국간의 FTA 협상이 보여주는 결과와 시사점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되는 중국의 FTA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중국의 대 파키스탄 관세 양허 품목 및 특혜 마진

NO	HS 코드	품 목	특혜 마진(%)
1	03019190	기타 활송어	24
2	03019290	기타 활뱀장어	33
3	03019390	기타 활 잉어	24
4	03019999	기타 활어	24
5	03021900	기타 신선 냉장 연어	33
6	03022100	신선 냉장 넙치	25
7	03022200	신선 냉장 가자미	25
8	03022300	신선 냉장 서대기	25
9	03022900	기타 신선 냉장 넙치, 가자미류	50
10	03023100	신선 냉장 날개다랑어	25
11	03023200	신선 냉장 황다랑어	25
12	03023300	신선 냉장 가다랭이	33
13	03023900	기타 신선 냉장 다랑어	33
14	03024000	신선 냉장 청어	33
15	03025000	신선 냉장 대구	33
16	03026100	신선 냉장 정어리, 작은 청어	33
17	03026200	신선 냉장 해덕대구	33
18	03026300	신선 냉장 검정대구	33
19	03026400	신선 냉장 고등어	33
20	03026500	신선 냉장 돔발상어 및 기타 상어	25
21	03026600	신선 냉장 뱀장어	33
22	03026910	신선 냉장 갈치	33
23	03026920	신선 냉장 조기	33
24	03026930	신선 냉장 병어	33
25	03026990	기타 신선 냉장 어류	33
26	03031100	냉동 연어, 간장과 어란 제외	33
27	03031900	기타 냉동 연어, 간장과 어란 제외	33
28	03032900	기타 연어류	33
29	03033100	냉동 넙치	33
30	03033200	냉동 가자미	33
31	03033300	냉동 서대기	33
32	03033900	기타 냉동 넙치, 가자미류	20
33	03034100	냉동 날개다랑어	25
34	03034200	냉동 황다랑어	25
35	03034300	냉동 가다랭어	25

NO	HS 코드	품 목	특혜 마진(%)
36	03034900	기타 냉동 다랑어, 간장과 어란 제외	25
37	03035000	냉동 청어(대서양, 태평양 청어), 간장과 어란 제외	33
38	03036000	냉동 대구	33
39	03037100	냉동 정어리, 작은 청어	33
40	03037200	냉동 해덕대구	33
41	03037300	냉동 검정대구	33
42	03037400	냉동 고등어	33
43	03037500	냉동 돔발상어 및 기타 상어	25
44	03037600	냉동 뱀장어	33
45	03037700	냉동 농어	33
46	03037910	냉동 갈치	50
47	03037920	냉동 조기	50
48	03037930	냉동 병어	50
49	03037940	냉동 틸라피어	50
50	03037990	기타 냉동 어류	50
51	03038000	냉동 간장 및 어란	10
52	03041000	신선 냉장 어류 필렛	25
53	03053000	건조 또는 염장 어류 필렛	22
54	03056100	건조 또는 염장 청어(대서양, 태평양 청어)	31
55	03056200	건조 또는 염장 대구	25
56	03056300	건조 또는 염장 멸치	25
57	03061200	냉동 랍스터	28
58	03061311	냉동 새우살	50
59	03061312	냉동 북쪽 분홍새우	50
60	03061319	기타 냉동 새우살	50
61	03061321	냉동 참새우살	50
62	03061329	기타 냉동 새우살	50
63	03073900	기타 냉동, 건조, 염장 십조개	30
64	03074900	기타 냉동, 건조, 염장 오징어 및 문어	17

자료 : 중국 상무부

〈부록 2〉 파키스탄의 대 중국 관세 양허 품목 및 특혜 마진

NO	HS 코드	품 목	특혜 마진(%)
1	0301.10	관상어	100
2	0301.91	송어 치어	100
3	0301.92	뱀장어 치어	100
4	0301.93	잉어 치어	100
5	0301.99	농어 치어	100
6	0302.11	신선 냉장 송어	100
7	0302.12	신선 냉장 대서양 연어	100
8	0302.19	기타 신선 냉장 연어	100
9	0302.21	신선 냉장 넙치	100
10	0302.22	신선 냉장 가자미	100
11	0302.23	신선 냉장 서대기	100
12	302.29	기타 신선 냉장 넙치, 가자미류	100
13	0302.31	신선 냉장 날개다랑어	100
14	0302.32	신선 냉장 황다랑어	100
15	0302.33	신선 냉장 가다랑어	100
16	0302.39	기타 신선 냉장 다랑어	100
17	0302.40	신선 냉장 청어	100
18	0302.50	신선 냉장 대구	100
19	0302.61	신선 냉장 정어리, 작은 청어	100
20	0302.62	신선 냉장 해덕대구	100
21	0302.63	신선 냉장 검정대구	100
22	0302.64	신선 냉장 고등어	100
23	0302.65	신선 냉장 돔발상어 및 기타 상어	100
24	0302.66	신선 냉장 뱀장어	100
25	0302.69	신선 냉장 갈치	100
26	0302.70	신선 냉장 간장 및 어란	100
27	0303.19	냉동 연어, 간장과 어란 제외	100
28	0303.21	냉동 송어	100
29	0303.22	냉동 대서양 연어	100
30	0303.29	기타 냉동 연어	100
31	0303.31	냉동 넙치	100
32	0303.32	냉동 가자미	100
33	0303.33	냉동 서대기	100
34	0303.39	기타 냉동 넙치, 가자미류	100
35	0303.41	냉동 날개다랑어	100
36	0303.42	냉동 황다랑어	100
37	0303.43	냉동 가다랑어	100
38	0303.49	기타 냉동 다랑어, 간장과 어란 제외	100

NO	HS 코드	품 목	특혜 마진(%)
39	0303.50	냉동 청어(대서양, 태평양 청어), 간장과 어란 제외	100
40	0303.60	냉동 대구	100
41	0303.71	냉동 정어리, 작은 청어	100
42	0303.72	냉동 해덕대구	100
43	0303.73	냉동 검정대구	100
44	0303.74	냉동 고등어	100
45	0303.75	냉동 돔발상어 및 기타 상어	100
46	0303.76	냉동 뱀장어	100
47	0303.77	냉동 농어	100
48	0303.78	기타 냉동 대구	100
49	0303.79	냉동 갈치	100
50	0303.80	냉동 간장과 어란	100
51	0304.10	신선 냉장 어류 필렛	100
52	0304.20	냉동 틸라피어 필렛	100
53	0304.90	냉동 어류 필렛	100
54	0305.10	식용 어분 및	100
55	0305.20	건조, 훈제, 염장 간장 및 어란	100
56	0305.30	건조, 염장 어류 필렛	100
57	0305.41	훈제 연어	100
58	0305.42	훈제 청어(대서양, 태평양 청어) 및 필렛	100
59	0305.49	기타 훈제 어류 및 필렛	100
60	0305.51	건조 대구	100
61	0305.59	건조 해마, 건조 실고기	100
62	0305.61	염장, 염수장 청어(대서양, 태평양 청어)	100
63	0305.62	염장, 염수장 대구	100
64	0305.63	염장, 염수장 멸치	100
65	0305.69	염장, 염수장 갈치	100
66	0306.11	냉동 닭새우	100
67	0306.12	냉동 바닷가재	100
68	0306.13	냉동 새우살	100
69	0306.14	냉동 꽃게	100
70	0306.19	냉동 민물 닭새우살	100
71	0306.21	닭새우 종묘	100
72	0306.22	바닷가재 종묘	100
73	0306.23	새우, 보리새우 종묘	100
74	0306.24	게 종묘	100
75	0306.29	기타 갑각류 종묘	100

자료 : 중국 상무부